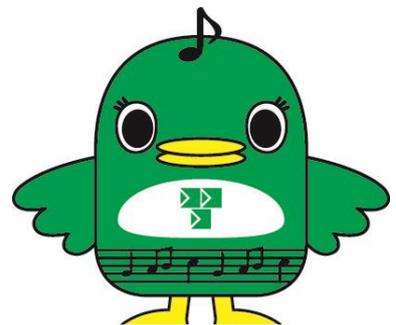


생활보호부정수급방지 안내서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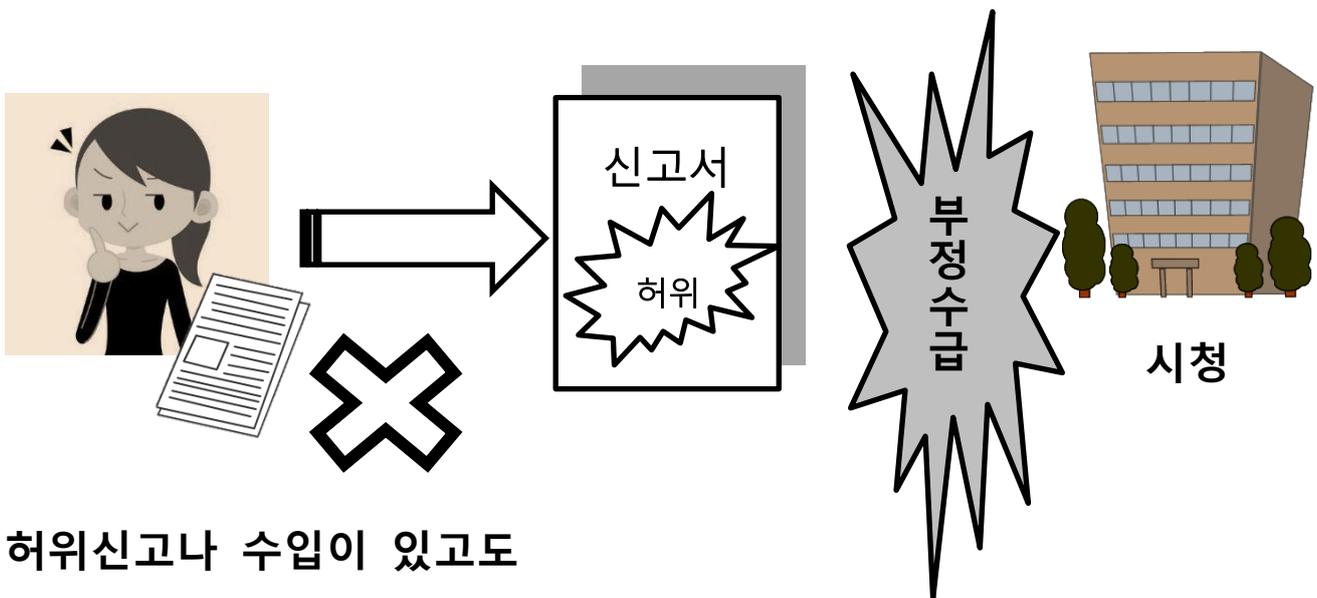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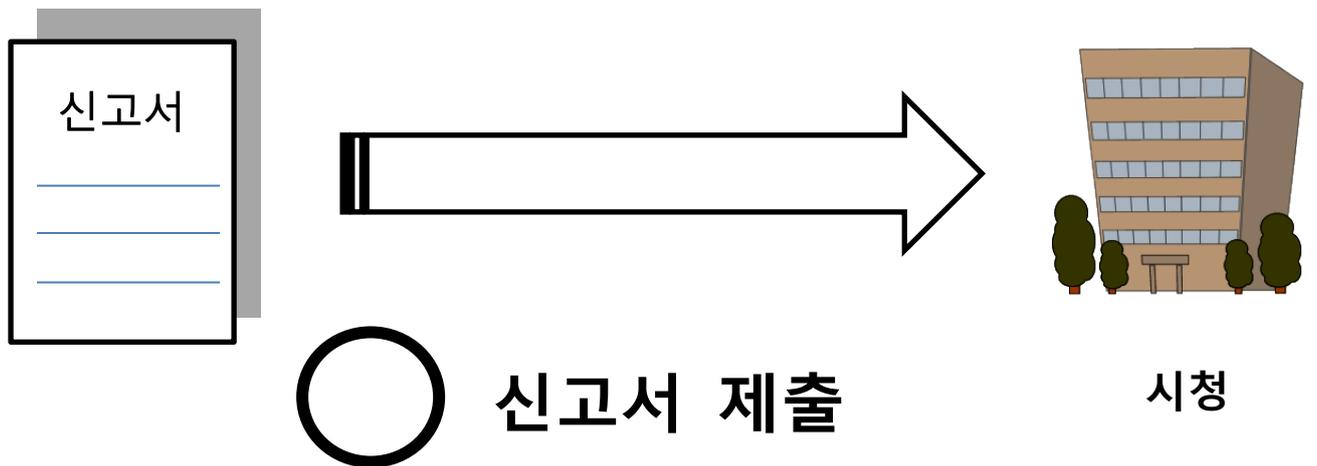
나라시노시건강복지부생활상담과



부정수급이란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본인 가구의 수입이나 가구원의 상황에 변화가 있을 때는 시청 생활상담과에 신속히 바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바로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해서 보호비를 받는 것을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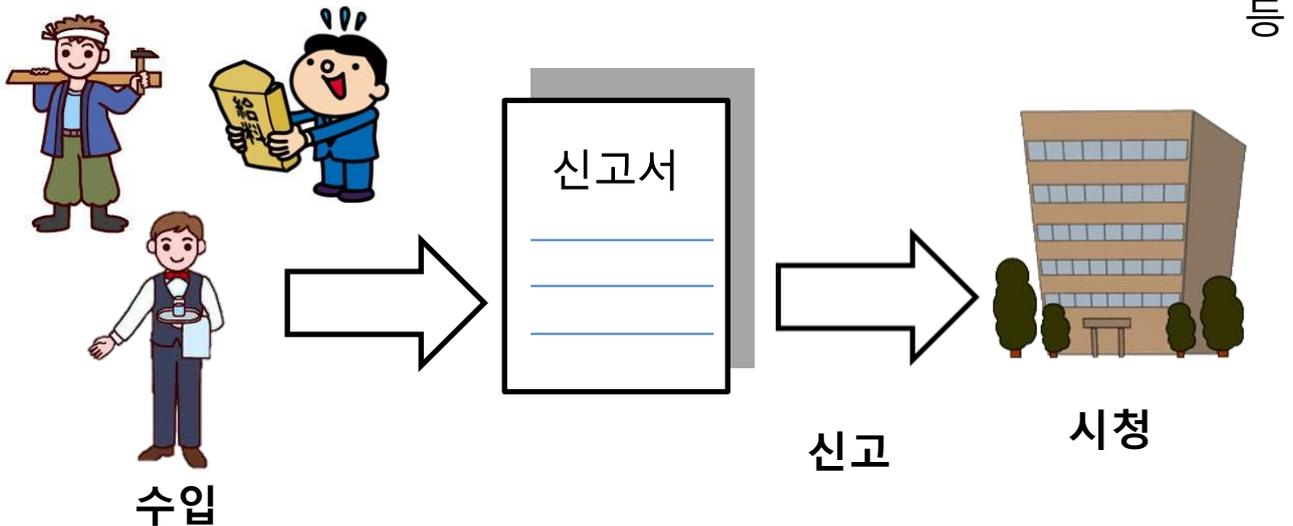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1 「일해서 받은 수입을 신고하기」

일을 해서 수입이 있을 때는 꼭 생활상담과에 신고하세요.

예

- 정기적인 수입 (매월 월급 등)
- 임시적인 수입 (보너스나 일당의 월급 등)
- 미성년자 (고교생 포함) 아르바이트 수입



생활보호법 (피보호자 권리 및 의무)

제 61 조 피보호자는 수입 지출 기타 생계상황에 대해서 변동이 있었을 때 또는 거주지 혹은 세대의 구성에 이동이 있었을 때는 바로 보호의 실시기관 또는 복지사무소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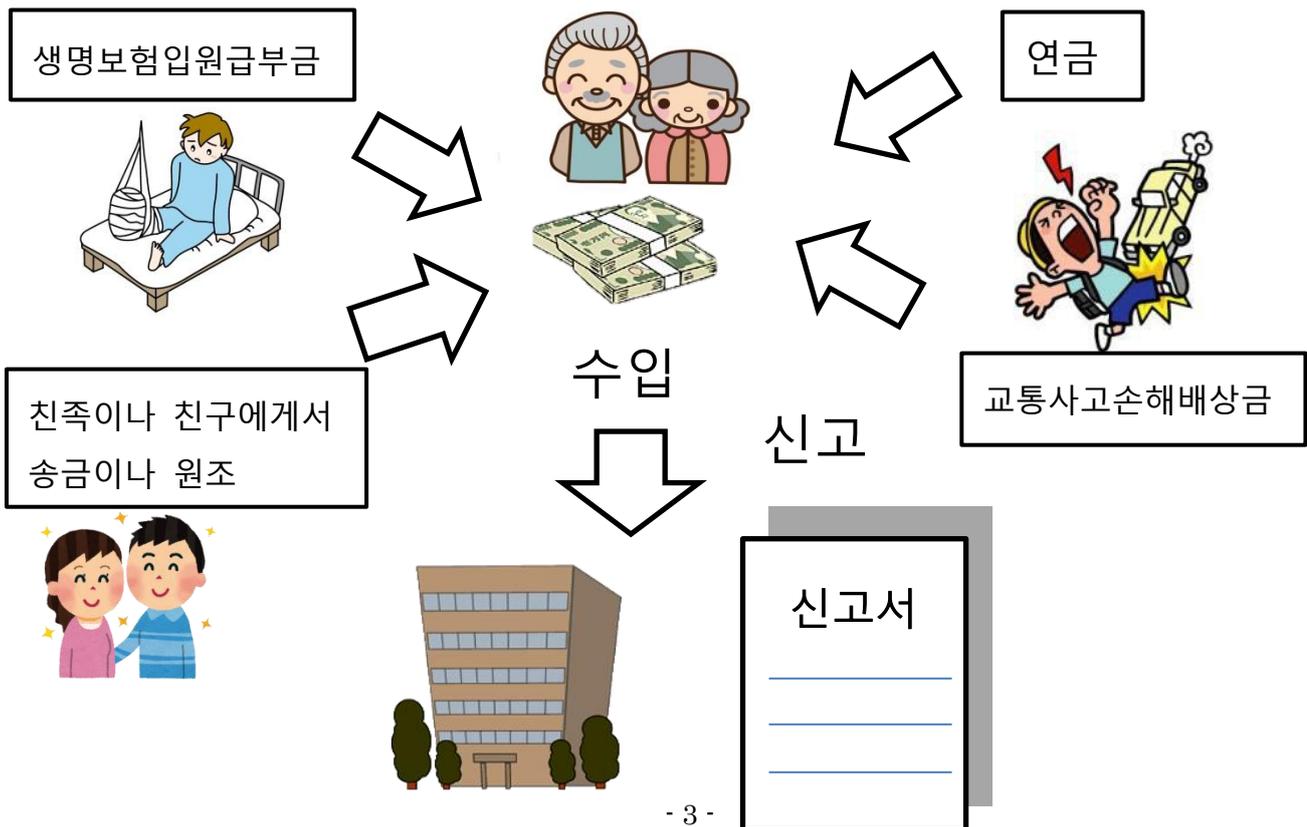
부정수입이 되지 않도록

2 「일하지 않고 받은 수입을 신고하기」

연금이나 원조 등 일하지 않고 받은 수입이 있을 때도 꼭 신고하세요.

예

- 연금이나 아동수당 등 공적수당의 수입
- 생명보험의 입원급부금이나 해약반려금
- 세대주와 동거인 이외에게서 송금이나 원조
- 교통사고의 상대방에게서 손해배상금
- 인터넷 옥션에 출품해서 받은 수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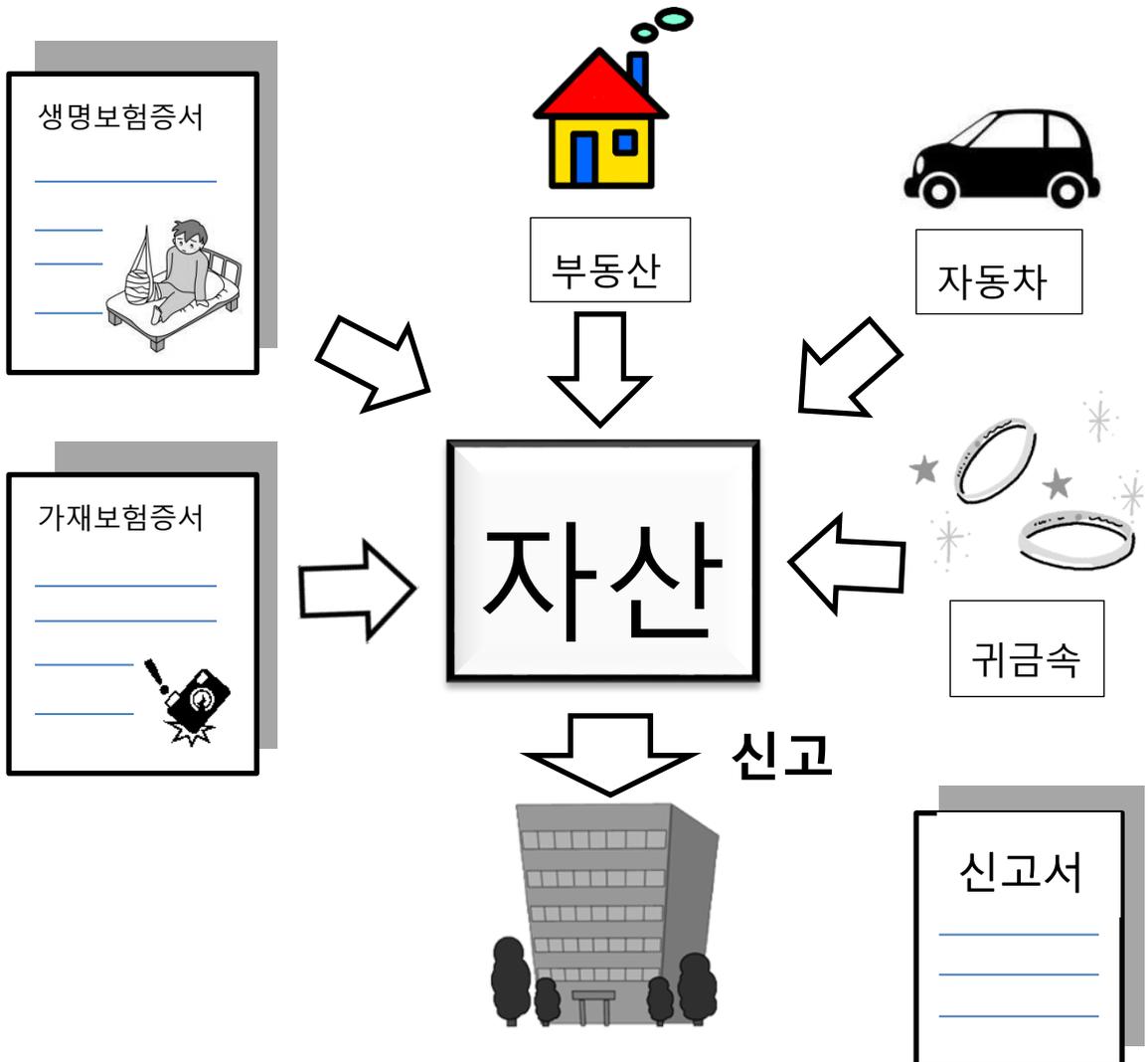
시청 부정수입이 되지 않도록

3 「자산을 신고하기」

자산이 있을 때는 꼭 생활상담과에 신고하세요.

예

- 생명보험 (학자보험 · 공제보험 등)
- 손해보험 (화재보험이나 가재보험 등) 등 각종보험
- 토지나 집 등 부동산
- 자동차나 값비싼 귀금속류 등



시청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4 「세대상황의 변화를 신고하기」

세대원이 늘었을 때나 줄었을 때는 꼭 생활상담과에 신고하세요.

예

- 세대원 전출 또는 전입
- 세대원 입원 또는 퇴원
- 세대원 출생이나 사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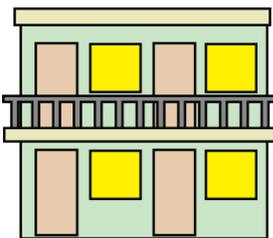
5 「필요한 비용은 정확하게 신청하기」

일시적으로 필요한 생활비용은 정확하게 신청해서 쓰세요.

예

- 이사할 때 비용 (보증금 · 사례금 · 운송비 등)

등



이러한 예시 이외의 수입이나 자산 세대상황에 변화가 있었을

때도 정확하게 생활상담과에 신고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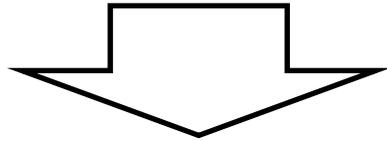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을 받았을 때는 부정하게 얻은 돈을 생활상담과에 돌려줘야 합니다. 또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 · 고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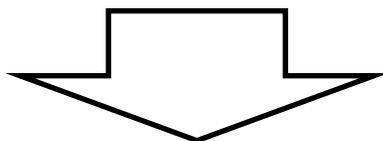
일해서 받은 수입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정확하게 신고할 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공제 (기초공제 · 미성년자공제 등) 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 부분도 포함해서 생활상담과에 돌려줘야 합니다.

예 2

생활보호수급 중에 차금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나 금융기관에서 돈 (연금담보를 포함) 을 빌렸을 경우



차금도 수입으로 간주되므로 이미 받은 보호비를 생활상담과에

돌려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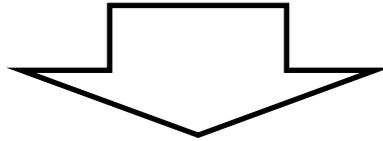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예 3

부양의무자에게서 매달 송금을 받고 있지만, 신고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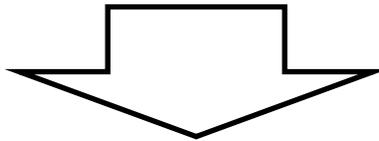
않을 경우



부양의무자에게서 송금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니까 송금받은 금액을 생활상담과에 돌려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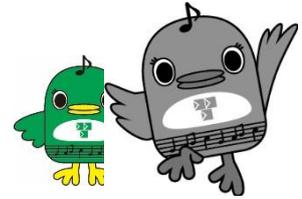
예 4

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의 보유는 세대의 상황 · 자동차의 처분가치 ·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면서 보유를 인정하는지 검토하고, 만약 보유가 인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분해야 하고, 그 처분의 수입이 있었을 경우에는 받은 수입의 금액을 생활상담과에 돌려줘야 합니다.

생활보호법 (비용 등의 징수)



제 78 조 부실의 신청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보호를 받고 또는 타인의 행세를 해서 받은 자가
있을 경우에 보호비를 지불한 とどうふけん 都道府県 또는
しちようそん 市町村 장 (시장·촌장 등) 은 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그 사람에서 징수하고, 그 밖에
징수하는 그액 100 분의 40 을 곱해서 얻은 금액의
이하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벌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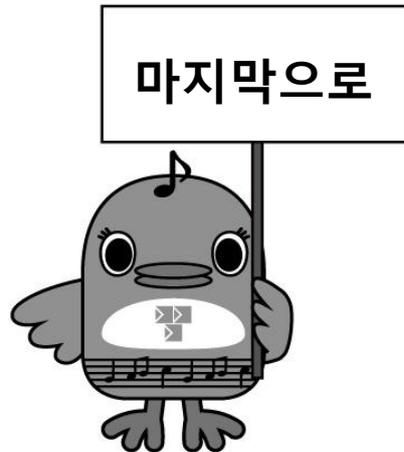


제 85 조 부실의 신청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보호를
받고 또는 타인의 행세를 해서 받은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탈수가 거듭되면 「부실의 신고」로 판단합니다.

※필요한 지도·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는 지급 정지 또는

지급을 폐지합니다.



- 생활보호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올바른 신고에 유의하세요.
- 모르는 것이나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담당하고 있는 케이스워커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문의

나라시노시건강복지부생활상담과

전화 : 047-451-1151 (대표)

내선 206·217

047-453-9205 (직통)

FAX : 047-453-9309

